

# 윤리위원회규정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정 1965. 10. 23 | 개정 1988. 1. 1    |
| 개정 1973. 3. 23  | 개정 1991. 1. 1    |
| 개정 1976. 3. 26  | 개정 1995. 9. 19   |
| 개정 1976. 11. 2  | 개정 1999. 9. 14   |
| 개정 1977. 8. 30  | 개정 2001. 3. 29   |
| 개정 1977. 10. 31 | 개정 2004. 2. 26   |
| 개정 1978. 10. 31 | 개정 2014. 2. 27   |
| 개정 1981. 10. 29 | 개정 2022. 9. 21   |
| 개정 1983. 10. 28 | (총회승인 2022.2.24) |
| 개정 1984. 10. 28 |                  |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 및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징계절차, 징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구성 등) ①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 시·도 건축사회에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법률전문가 등 법률적 소양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③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1 이상 법률전문가 등 법률적 소양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(이하 ‘위원’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6조 제2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임기에 따른다.

제3조(직무) 윤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2. 건축사 및 건축사업계의 자정(自淨)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회원 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직무수행 원칙 등) ① 윤리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며, 건축사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위반 혐의 제보자 등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제보자 등이 그 제보 사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.

-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양심과 신의로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- ④ 이 규정에 의하여 윤리업무에 관계하는 위원 및 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윤리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)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.

1.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 또는 자격 취소된 경우
 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
  3. 회원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  4. 외부전문가 위원이 소속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징계처분된 경우
  5. 위원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인사발령 등을 사유로 위원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
제6조(산하 위원회 등) ①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를 두고,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건축사회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건축사회 윤리위원회가 조사위원회 기능을 겸할 수 있다.

- ②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센터장과 협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건축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.
- ③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7조(회원 등의 징계요청) ① 회원등이 다른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장 또는 건축사회 회장(이하 “회장”이라 한다)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징계대상자의 불법·부당 행위와 그 내용, 위반 규정 등을 기재한 징계요청서에 서명 날인한 후,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은 윤리규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거나 징계요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를 위반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
제8조(자료의 보완요구 및 사실조사 등) ① 회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징계요청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관계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를 요청한 회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.

- ② 회장은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회원의 중대한 윤리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장에게 해당 회원의 윤리위반

협의를 대한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
## 제2장 징계요청 및 조사 등

제9조(징계의 요청 및 시효) ① 회장은 윤리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하여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를 담당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청은 해당 회원의 위반 행위와 위반 규정, 위반내용 등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징계의 요청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

제10조(징계의 심의 및 심의·결정기간) ① 위원장은 제9조에 의한 징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심의·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징계 요청권자에게 징계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 요청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관계기관에서 징계처분 또는 민·형사상 소송절차에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④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심의·결정 기간은 회장이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날로부터 산정한다.

제11조(제척, 기피 및 회피)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당해 징계 심의대상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인 경우
2. 징계대상자와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징계 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
3. 징계대상자의 건축사사무소 또는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었던 건축사사무소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4.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징계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(疎明)하고 해당 위원에 대해 “별지 제2호 서식”에 의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윤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의 개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“별지 제2호 서식”에 의한 회피신청서를 제출

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이 제척·기피·회피(이하 “제척 등”이라 한다)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계산에 있어 당해 위원을 제외하고 재적위원을 산정한다. 다만, 해당 윤리위원회 정원의 1/3이상 제척 등이 된 경우, 회장은 당해 사건을 심의할 임시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⑥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등이 된 경우에는 재1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징계대상자의 출석·진술권 등)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징계대상자는 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징계심의 기일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징계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징계대상자가 윤리위원회의 출석·진술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진술을 하지 않거나,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사건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⑤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에 허위로 진술하거나, 윤리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(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처분 권한) 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, 기각, 각하 등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징계처분 : 징계협약이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

2. 기각 : 징계 요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

3. 각하 : 징계시효의 완성 또는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징계요청에 대한 결정

② 정관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별 각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 권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앙윤리위원회 : 경고, 회원 권리정지, 제명,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요청 결정

2.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: 경고, 회원 권리정지,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

③ 정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징계는 “[별표1]”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요청은 “[별표2]”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### 제3장 윤리위원회 운영 등

제14조(위원 위촉 등) 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사회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- ③ 중앙윤리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에서 협회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받은 사람은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건축사회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
  - 2. 2개소 이상 건축사회 회원간 분쟁이 연계되어 있을 때
  - 3. 관계기관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
  - 4.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
  - 5. 정관 제50조 제1항 제3호의 회원 제명과 관련하여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
  - 6.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건축사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
  - 7. 기타 회원의 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협회 회장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6호의 경우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할 수 있다.

제16조(건축사회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정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
  - 2. 건축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건축사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
  - 3. 관계기관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
  - 4. 협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
  - 5. 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관여한 건축공사의 부실방지 또는 안전사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때
  - 6. 기타 회원의 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의 심의결과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정관 제50조 제1항 제3호 내지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건축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간의 심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윤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징계심의 기관 변경을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협회 회장에게 징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,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다시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(소집 및 결정) ① 윤리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거나,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회의목적과 안건 등을 기재한 문서를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

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9조(총무위원) ① 윤리위원회는 총무위원 1인을 둔다.

② 총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,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20조(보선) ① 회장은 윤리위원회 재적위원의 5분의 1이상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선 절차는 제14조에 따른다.

제21조(결과보고) 위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 사항을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따라 징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수락여부의 결정) ① 회장은 제21조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협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.

② 이사회는 수락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, 피징계자 및 건축사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수락 결정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이사회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재심청구)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“별지 제5호 서식”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축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.

제24조(재심의 절차 및 결정) ① 회장은 제22조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받거나 제23조에 의한 재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된 사건의 재심청구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.

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의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결정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다.

- ⑤ 제1항에 의한 재심요청 사건의 재심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10조 규정에 따른다.
- ⑥ 제3항에 의하여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 수락여부 결정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다.

제25조(징계 발효) ① 징계 결정사항은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회장이 “별지 제4호 서식”에 의거 통보함으로써 발효하며, 징계기간은 제23조에 의한 재심 청구기일 경과 후부터 산정하여야 한다.

② 피징계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1심에서의 징계효력은 재심 확정전까지 유보된다

제26조(징계결과 보고 및 징계 요청) ① 협회 회장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수락 결정한 징계사항 중 정관 제5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한 때에는 재심청구 기한이 경과한 날 또는 재심결과 해당 징계가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협회 회장은 제22조에 의하여 건축사법을 위반한 회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징계 요청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원의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보 칙

제27조(회의의 비공개 등) 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.

제28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윤리위원회가 징계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 외에 속기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29조(문서의 송달) ① 윤리위원회가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송달한 문서가 수신자의 수취거절,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협회에 신고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모사 전송(FAX)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.

③ 수신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, 윤리위원회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 다만, 공시송달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를 1회 이상 취한 후에 하여야 한다.

④ 공시송달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

제30조(회의비용 등)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 수당과 회의참석비, 교통비 등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1조(세부사항)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윤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6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7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(기타) 본 규정중 건축사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회장은 건축사회회장으로, 이사회는 간사회로 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7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7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7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8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본 규정은 서기 198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본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8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

본 규정은 서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9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199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서기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관 인가일(2022.7.29.)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윤리위원회 구성 및 경과조치) 협회 회장과 건축사회 회장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징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회원 징계 결정기준

### I. 일반기준

1. 징계처분 대상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징계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2. 징계처분 요구일 이전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1개월 이상의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, 2회 이상의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처분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처분을 기준하여 2분의 1범위내에서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다.
3.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,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원 권리정지기간은 (2년)을 초과할 수 없다.
4. 징계처분요구일 현재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5. 최근 3년 이내에 건축행정 및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이상의 행정기관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해당 징계처분 기준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6. 상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가중·감경기준은 처분 내용이 회원 권리정지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되, 감경기준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사회적 가치나 통념과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.
7. 협회의 회원 징계처분과 별개로 해당 회원의 징계사유가 건축사법 및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8. 회원 권리정지 징계처분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징계기간동안 정관 제9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고, 협회가 발행하는 간행물 보급을 중단하며, 위원 및 포상 등 추천과 조사검사업무대행 및 허가권자지정 감리 추천 등을 배제한다.
9. 회원이 정상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, 2년 이상 장기미납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징계처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II. 세부기준(안)

| 위 반 내 용  | 징계처분 기준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|
| 1. 윤리규정 제15조 건축유산 보존, 제16조 환경에 대한 고려, 제19조 업무협력, 제25조 계속교육, 제28조 관리감독 책임, 제30조 상호존중, 제32조 제1호, 제3호 업무환경 개선, 제33조 공익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고               |
| 2. 윤리규정 제12조 인권, 건강, 안전, 복지의 추구, 제32조 제2호 업무환경 개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| 회원권리정지<br>1개월 이하 |
| 3. 윤리규정 제6조 품위와 청렴, 제7조(이해충돌 방지 및 진실성)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17조 업무 수행 태도, 제20조 진행사항 고지, 제22조 기록유지 및 보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| 회원권리정지<br>3개월 이하 |
| 4. 윤리규정 제4조 강요금지, 제8조 부당행위 거부, 제9조 허위홍보 금지, 제18조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수입 및 계약서 작성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| 회원권리정지<br>6개월이하  |
| 5. 윤리규정 제7조(이해충돌 방지 및 진실성) 제4호, 제10조 금품 및 이권수수 금지, 제21조 기밀유지, 제23조 법규 준수, 제26조 제2호(법시행령 제23조 위반) 제3호, 제4호, 제27조 지적재산보호, 제29조 공정한 설계공모, 제31조 업무질서유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| 회원권리정지<br>12개월이하 |
| 6. 윤리규정 제26조 제1호 자격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| 제명               |

- ※ 주1)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징계기준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2) 징계처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,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
- 3) 협회의 회원 징계처분과 별개로 해당 회원의 징계사유가 건축사법 및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법에 따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[별표 2 (신설)]

## 건축사 징계 요청 기준(안)

□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징계요청 기준

| 위 반 내 용  | 징계처분기준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|
|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| 건축사자격 등록취소       |
| 2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 | 건축사 업무정지 3개월 이하  |
| 3.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| 건축사 업무정지 12개월 이하 |
| 4.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| 건축사 업무정지 6개월 이하  |
| 5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 | 건축사 업무정지 8개월 이하  |
| 6.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| 건축사 업무정지 6개월 이하  |
| 7.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| 건축사 업무정지 3개월 이하  |
| 8. 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| 건축사 업무정지 8개월 이하  |
| 9. 법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                 |
| - 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8조를 위반한 경우<br>(강요금지) (부당행위거부) (허위홍보 금지) (계약서 작성)  | 건축사 업무정지 6개월 이하  |
| - 제7조 제4호, 제10조, 제23조, 제26조 제2호 내지 제4호, 제27조, 제29조, 제31조를 위반한 경우(이해충돌 방지 및 진실성), (금품, 이권수수 금지), (법규 준수), (자격대여 금지), (지적재산보호), (공정 설계공모), (업무질서 유지) | 건축사 업무정지 12개월 이하 |
| - 제26조 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<br>(자격대여 금지)  | 건축사 자격취소         |
| 10. (법 제30조의3)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| 건축사자격 등록취소       |

- ※ 주 1)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징계기준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 
 2) 징계처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,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
 3) 5년간 10개월 이상의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함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징계요청서

|           |      |  |      |  |
|-----------|------|--|------|--|
| 징계<br>대상자 | 성명   |  | 생년월일 |  |
|           | 자격번호 |  | 사무소명 |  |
|           | 전화번호 |  | 팩스   |  |
|           | 주소   |  |      |  |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위반<br>사항 | 위반규정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|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| 위반일시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| 징계청구의 취지(이유)<br>및 입증내용 |  |
|          | 첨부 서류 및<br>물건의 목록      |  |

위 회원은 별첨 증빙서류 내용과 같이 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윤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징계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징계요청인

협회(또는 건축사회)명 :

성명 : (인)

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또는 건축사회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제출서류 | 1. 징계요청서 1부<br>2. 첨부 서류 각 1부(입증자료 등)<br>3. 정회원 증명서 1부 |
|------|---|

(별지 제2호 서식)

(중앙 또는 건축사회) 윤리위원회 위원

기 피  
 회 피

신 청 서

① 안전명  
(또는 사건번호)

② 징계심의  
대상자 성명

③ 기피대상 위원

징계심의 대상자가 기피  
하고자 하는 위원 성명 기재

④ 신청사유

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중앙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귀하  
또는 건축사회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\* 필요시 입증서류 제출

# 서 약 서

성 명

소 속

(직 위)

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윤리위원회 (○○ 건축사회 윤리위원회)의 위원장(부위원장 또는 위원)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음 -

1. 상기 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양심과 신의로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2. 상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개인의 목적에 이용 하거나, 동 심의의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.
3. 본인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한다.
4. 상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.

20 . . .

위 본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장 귀하  
( ) 건 축 사 회 회장 귀하

(별지 제4호 서식)

## 징계 결정서

|      |      |  |      |  |
|------|------|--|------|--|
| 피징계자 | 성명   |  | 생년월일 |  |
|      | 자격번호 |  | 사무소명 |  |
|      | 전화번호 |  | 팩스   |  |
|      | 주소   |  |      |  |

|      |      |  |
|------|------|--|
| 징계처분 | 위반규정 |  |
|      | 위반내용 |  |
|      | 징계처분 |  |

위와 같이 윤리위원회규정 13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결정한다.

년 월 일

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: (인)  
또는 건축사회윤리위원회 위원장 : (인)

○○○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서류 | 1. 징계결정문 1부<br>2. 징계결정 회의록 및 속기록 각 1부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

(별지 제5호 서식)

## 재심 청구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|--|
| 재심<br>청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|  | 생년월일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번호 |  | 사무소명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 | 팩스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|  |      |  |
| 재심청구 대상<br>처분의 내용<br>(징계처분 및<br>이유) |      |  |      |  |
| 재심청구의<br>취지(이유) 및<br>입증내용 등         |      |  |      |  |
| 첨부 서류 및<br>물건의 목록                   |      |  |      |  |

위 본인은 (중앙, 건축사회)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( ) 통보를 받았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윤리위원회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:

(서명 또는 인)

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|      |  |
|------|--|
| 제출서류 | 1. 재심청구서 1부<br>2. 첨부서류 각 1부(입증자료 등)<br>3. 기타 |
|------|--|